

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

- ✓ 정년을 1년이상 운영 중인 중소·중견기업이
- ✓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명시적으로 도입하여
- ✓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

 **1인당 최대 720만원 지원**
(분기 90만원 X 2년간)



계속고용제도 시행일 관련 요건이 한시적으로 완화됐어요

관행적으로 정년퇴직자를 계속고용 하여온 기업이 취업규칙 등에
계속고용제도*를 명시하면서 시행일을 소급하는 경우 소급한
시행일부터 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인정

(기존에는 취업규칙에 명시한 날을 시행일로 봄, 시행일 소급 불인정)

*** 계속고용제도란?** 정년을 운영중인 기업이 정년을 ①연장 또는 ②폐지, ③정년 후 3개월 이내에
재고용 방법으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것

 예시

A근로자를 정년퇴직('20.10.1.) 후 계속고용한 기업이 '21.3.1. 취업규칙에
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면서 그 시행일을 A근로자 정년퇴직일 이전인
'20.9.1.로 소급하여 명시하는 경우 A근로자를 지원대상으로 인정

※ 다만, '20.1.1.~'21.12.31. 사이에 첫 번째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해
한시적 지원('19.12.31.이전에 정년에 도달하여 계속근로 중인 근로자는 지원불가)

장려금 신청



고용센터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